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12일, 이동업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이동업 의원

나. 제안이유

-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추가하여 녹색제품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녹색제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포함 규정 신설함(안 제10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현주)

가. 개정의 필요성

-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 이라 함)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함)에게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녹색제품 대상품목 판단기준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2015년 일부개정된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발전 등 사회, 경제, 기술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개정안 제2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녹색제품의 정의를 재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임.
- 개정안 제3조는 조례가 규율하는 대상이나 사항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다른 조례와 대립할 경우 어느 조례가 먼저 적용되는지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한 것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품질·안전 기준 등이 요구되는 경우 까지 본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7조에서 도지사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게 하였음.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서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행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가 및 환경 인식 개선, 녹색제품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개정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법 제조에 명시된 녹색제품 적용 범위에 포함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9년24일 폐지)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을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정하는 녹색제품 판단기준에서 삭제하였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법이 정하는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이며,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 역시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법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녹색제품 기준이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개정안 제10조제1항제5호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정하는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한 것은 에너지소비효율이 높고 공해오염 유발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함.

※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를 새로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함

○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다. 종합의견

○ 개정안은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 녹색제품 판단기준 정비 및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추가 및 법령 정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